공립어린이집(미탄·용평) 위탁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 364 제출년월일 2017. 09. . 제 출 자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○ 「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」제14조(위탁운영)에 의거 평창군 공립 어린이집(미탄·용평)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O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(위탁운영), 제15조(수탁자 선정), 제16조(위탁계약)
- O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□ 위탁운영 목적

○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

□ 시설현황

시설명	현 수탁자	위 치	아동 정원	아동 현원	교직원	비고
공립미탄 어린이집	장향순	미탄면 미탄문화길 20	36	25	6	재위탁 종료
공립용평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	최은순	용평면 새이들길 17	76	67	12	⇒ 변경위탁 추진

□ 위탁개요

O 위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단체(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) 또는 개인

O 위탁기간

- 공립미탄 : 2017. 11. 02. ~ 2022. 11. 01.(5년)

- 공립용평 : 2017. 12. 11. ~ 2022. 12. 10.(5년)

O 위탁내용 :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운영

□ 향후 추진일정

O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: '17. 9월

O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: '17. 10월

□ 민간 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

- O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에 많은 경험과 경력, 전문적인 지식,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,
- O 아동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, 보육교직원 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에 기여

□ 관련자료

O 관련법령 1부. 끝.

소관 관・과・소		주민생활지원과		
입	관·과·소장 직위·성명	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명 기		
안	담 당 직위·성명	아동청소년담당 신 미 진		
자	(전 화)	(330-2180)		

관계법령 발췌

□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

- 제14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내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(이하 "수탁자" 라 한다)이 직접 시설장이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제21조에 따라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 - ③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④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⑤ 시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5조(수탁자 선정)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<u>군수는 위원</u> 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16조(위탁계약)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정 한 별지 제16호서식의 <u>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</u>하며, 재위탁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.

-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.
-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-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 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 -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 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 -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